< 변경 대비표 >

1. 정정대상 투자신탁 : 유리베트남알파증권자투자신탁UH[주식]

2. 변경시행일 : 2022.05.11

3. 주요 정정사항 : 최근 결산기의 재무제표 확정으로 인한 정정 및 자본시장법(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신탁계약서]: 자본시장법(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정정 전	정정 후
제30조(기준가격 산정 및 공고) ① 집합투자업자는 제29조의	제30조(기준가격 산정 및 공고) ① 집합투자업자는 제29조의
규정에 따른 투자신탁재산의 평가결과에 따라 기준가격을	규정에 따른 투자신탁재산의 평가결과에 따라 기준가격을
산정한다. 기준가격[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은 제2항	산정한다. 기준가격[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은 제2항
의 기준가격의 공고・게시일 전날의 대차대조표상에 계상된	의 기준가격의 공고・게시일 전날의 재무상태표상에 계상된
투자신탁[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상당액]의 자산총액에서 부	투자신탁[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상당액]의 자산총액에서 부
채총액을 차감한 금액(이하 "순자산총액[당해 종류 수익증권	채총액을 차감한 금액(이하 "순자산총액[당해 종류 수익증권
의 순자산총액]"이라 한다)을 그 공고·게시일 전날의 수익 증권[당해 종류 수익증권] 총좌수로 나누어 산정하며, 1,000	의 순자산총액]"이라 한다)을 그 공고·게시일 전날의 수익 증권[당해 종류 수익증권] 총좌수로 나누어 산정하며, 1,000
ㅎ면[ㅎ에 ㅎㅠ 푸ㅋㅎ면] ㅎ되푸모 디푸이 현등이다, 1,000 좌 단위로 원미만 셋째자리에서 4사5입하여 원미만 둘째자	ㅎ면[ㅎ에 ㅎㅠ ㅜㅋㅎ면] ㅎ되ㅜ모 되ㅜ에 단층이며, 1,000 좌 단위로 원미만 셋째자리에서 4사5입하여 원미만 둘째자
리까지 계산한다.	리까지 계산한다.
② ~ ③ <생 략>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32조(투자신탁의 회계감사) ①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	제32조(투자신탁의 회계감사) ①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
탁의 결산기마다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부속서류를 작성하	탁의 결산기마다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부속서류를 작성하
여야 한다.	여야 한다.
1. <u>대차대조표</u>	1. <u>재무상태표</u>
2. ~ 3. <생 략>	2. ~ 3.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39조(투자신탁보수) ① <생 략>	제39조(투자신탁보수) ① <현행과 같음>
② 투자신탁보수의 계산기간(이하 "보수계산기간"이라 한다)	② 투자신탁보수의 계산기간(이하 "보수계산기간"이라 한다)
은 최초 설정일부터 매 3개월간으로 하며 보수계산기간 중	은 최초 설정일부터 매 3개월간으로 하며 보수계산기간 중
투자신탁보수[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상당액]를 매일 <u>대차대</u>	투자신탁보수[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상당액]를 매일 재무상
<u>조표상</u> 에 계상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	<u>태표상</u> 에 계상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
우가 발생하는 때에 집합투자업자의 지시에 따라 신탁업자	우가 발생하는 때에 집합투자업자의 지시에 따라 신탁업자
가 투자신탁재산에서 인출한다.	가 투자신탁재산에서 인출한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간이)투자설명서]: 최근 결산기의 재무제표 확정으로 인한 정정 및 자본시장법(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 • • • • • • • • • • • • • • • • • • •				
항	목	정정사유	정정 전	정정 후
요약정보				
		정기갱신	-	- 최근 결산기 기준 작성 등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5. 운용전단	문인력	기준일 현재	-	기준일 변경에 따른 업데이트

	갱신		
8.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모투자신탁의 투자대상] - 유리베트남알파증 권모투자신탁[주식] 가. 투자대상	자본시장법(시행 령) 개정사항 반영	- 채권 : 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을 말한다), 사채권(취득시 신용평가등급이 A- 이상이어야 하며, 사모사채권및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하는 사채 및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은 제외한다) 및 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통화로 표시된 것	- 채권 : 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을 말한다), 사채권(취득시 신용평가등급이 A- 이상이어야 하며, 사모사채권및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자산 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하는 사채및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은 제외한다) 및 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통화로 표시된 것
		- 자산유동화증권 :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되는 사채, <u>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u> 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 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 택저당증권 및 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통화로 표시된 것	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되는 사채, <u>한국주택금융공사법</u> 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 및 이와 동일하거나
나. 투자제한		- 동일종목 투자 나.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가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직접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어음 법시행규칙 제10조의2에서 정하는 국가가발행한 채권,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이 따른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 한국주택금융공사 또는법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주택저당증권을 말한다), 법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융기관에 금전을 대여하거나예치·예탁하여 취득한 채권에 투자신탁자산총액의 30%까지 투자하는 경우	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직접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어음 법 시행규칙 제10조의2에서 정하는 국가가 발행한 채권,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한국주택금융공사 또는 법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주택저당증권을
10.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라. 이 집합투자기 구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		21.08%	21.23%
12. 기준가격 산정 기준 및 집합투자재 산의 평가	자본시장법(시행 령) 개정사항 반영	- 산정방법 : 당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 [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은 공 고·게시일 전날의 <u>대차대조표상</u> 에 계상	[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은 공

유리자산운용

		된 4사5입하여 원미만 둘째자리	상된 4사5입하여 원미만 둘째자리
		까지 계산한다.	까지 계산한다.
13. 보수 및 수수	정기갱신	-	최근 결산기 기준 작성
료에 관한 사항			
제3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			
1. 재무정보	정기갱신	-	최근 결산기 기준 작성
2. 연도별 설정 및			
환매 현황			
3. 집합투자기구			
의 운용실적			
제4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업자	기준일 현재	-	기준일 변경에 따른 업데이트
에 관한 사항	갱신		

<끝>.